삼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회는 삼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2조(정의) 이 회는 '삼기초등학교 학부모회'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다.

- 1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
- 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
제4조(회원)

회원의 자격은 삼기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

(학부모란 부모, 후견인,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)

제5조(구성)

학부모회로만 구성한다.

(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로 대의원회는 구성하지 않음)

제6조(임원의 구성과 선출)

1. 이 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의 임원을 둔다.

(임원 수는 학부모회에서 정할 수 있음)

- 2. 회장은 전체 학부모 중에서 후보 1인을 추천한다. 추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거 총회에서 투표해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부회장은 후보가 없을 경우,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 (바이러스감염증 및 기타 학교 사정상 학부모총회 개최가 힘들 경우, 온라인 투표 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함)
- 3. 회장,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
- 4.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.
- 5. 부회장이 궐위되고 임시 회의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부모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6. 학생 수가 워낙 적은 소규모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, 학교 운영위 원회 학부모위원 위원장과 위원이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 업무를 총괄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자하며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총회)

- 1.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수 1/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4.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- 5.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조례는 10분의 1 출석으로 되어 있으나 소규모학교에서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)
- 6.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.

제9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- 1.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가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- 나.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
- 다.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 항
- 라. 그밖에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학부모의 의결 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.

제10조(재정)

- 1.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.
- 2.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3. 학교는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회계연도)

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해산)

- 1. 학교 통·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·폐합일자로 해산한다.
- 2.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3.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한다.

제13조(청산)

이 회를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(위임규정)

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.